

協 會 沿 革

1. 1963年 12月 16日 法律第1536號로 公布 實施된 建築士法 第6章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士로서 事務所의 登錄을 받은 者를 會員으로 하여 特別法人 大韓建築士協會를 設立하게 되었다.

2. 1965年 4月 25~26兩日 間에 建設部에서 施行한 建築士資格考試에 合格한 後 建設部長官의 免許를 받고 建築士法 第23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長官에게 建築士事務所 開發登錄을 함으로서 建築士協會 會員資格을 얻게 된 者들 中 金舜河等 11人이 發起人이 되어 1965年 7月 6日 發起人總會를 開催하고 總務 運營 財政의 3個 委員會를 構成하여 10餘次에 걸친 會議에서 創立總會 開催에 對한 諸般準備를 完了하였다.

3. 1965年 9月 25日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創立總會를 開催 參席者 發起人 金舜河外 10名 및 會員 朴永晚 外 212名이 參席

1965年 10月 23日 前記 場所에서 創立總會 續開 會員 127名이 參席

위와 같이 2회에 걸친 創立總會에서 會長 1人 理事 5人 監事 2人의 任員을 選出하고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을 承認, 定款 事務所規程 倫理規約 및 倫理委員會 規程 支部運營規程等을 制定하였다.

4. 1965年 12月 3日 字 建國指令413-5124號로 建設部長官으로부터 協會設立 認可 및 任員의 就任承認을 받았으며 1965年 12月 9日 字 서울民事地方法院 登錄番號 第1255號로 大韓建築士協會의 主事務所를 서울特別市 中區會賢洞 3街2番地에 두고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各道 11個支部를 設立하여 登記 完了함으로서 特別法人 大韓建築士協會가 設立된 것이다.

5. 1965年 12月 10日 協會 主事務所에서 業務를 開始하였으며 1966年 1月 1日을 期하여 執行部인 事務處의 陳容을 補充하여 正常 事務 運營을 期하였으며 事務室의 狹少와 會員의 便宜를 圖謀하기 爲하여 1966年 2月 19日 事務室을 서울特別市 中區 北倉洞 94의 12號 (東亞빌딩 501號室)로 移轉 執務하는 한便 1966年 4月 1日을 期하여 서울特別市 支部를 協會 事務室로 移轉케 하고 設計圖書登錄 事務를 서울特別市 支部에 委任하여 支部運營의 發展을 圖謀하고 協會 本來의 事業目的 達成을 積極 推進키로 하였다.

6. 66年 7月 2日자로 會員의 便利를 圖謀하고 協會 諸般事業을 積極 推進하며 迅速히 遂行하기 爲하여 首都 서울의 經濟 行政의 中心街로 注目되는 現事務所 (서울特別市 中區 武橋洞 33의 1武橋빌딩 301號室)로 서울特別市 支部와 같이 移轉하였다.

7. 66年 5月 31日 現在로 全國의 會員數는 1級이 337名 2級이 210名으로 合計 547名이다.

<사진, 上左=開說하는 金會長 上右=當選된 理事 左로부터 金在哲 姜奉辰 車景淳 安仁模 張起仁 下=總會 全景>

NEWS

建築士業務의 報酬基準 認可

協會 發足 以後 重要事業의 하나로 看做되어오던 建築士業務의 報酬基準은 建築士法 第26條 및 同法施行令 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1966年 7月 5日 字로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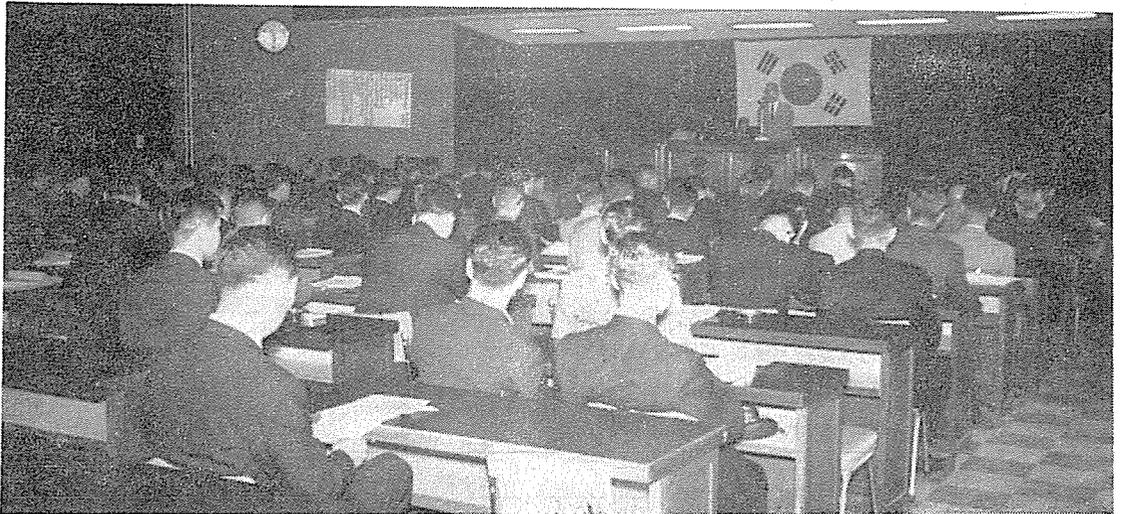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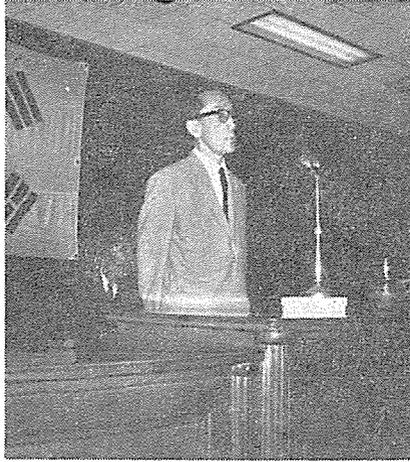
이번에 認可된 報酬基準은 協會創立과 더불어 그 制定을 서둘러 料率制定委員會를 構成하여 草案을 作成하고 數次에 걸친 會議에서 거듭 審議를 하여 通過된 후 66年 3月 19日 第3回 各市道 支部長會에 附議하여 若干의 字句修正을 하고 協贊을 받아 66年 4月 6日

建設部에 認可 申請을 하였든 바, 數次에 亶하여 折衝한 結果 原案이 大幅 修正되어 다시 66年 6月 10日 字로 建士協 第132號로서 建設部에 認可申請을 再次 내어 建國市指令 444, 1-95 (1999. 7. 5)로서 認可를 받았다.

認可된 報酬基準은 現時點에서 비록 滿足할 만한 것은 못되더라도 國家의 低物價 經濟政策에 順應하는 意味에서 이의 遵守는 물론 會員의 品位 保全과 技術向上으로 建築物의 質의 發展을 圖謀하여 國家施策에 이바지할 것을 바란다.

建築業法改正案 協會에서 追加建議

建築業法中 改正 法律案은 現在 國會建設委員會에서 審議中에 있는바 同改正案中 第16條 (建設技術者에 對



한 免許) 3項을 建築士免許 所持有는 建設技術者 免許를 받도록 追加改正할 것을 國會에 建議하였는데 當協會의 이 建議가 採擇될 希望을 보이고 있다.

設計用役契約은 隨意契約으로 要請

政府 各 部處에서 執行하는 建築物의 設計 契約에 있어서 建築設計는 建築士에 依하여 創作되는 藝術作品으로서 商品의 賣買 構造物의 都給等과 同一하게 取扱할 수 없는 性質의 것임으로 設計契約은 豫算會計法 施行令 第108條 第1項 第1號를 適用하여 隨意契約에 依하여 執行되도록 善處하여 줄 것을 關係部處에 要請하였다.

設計用役에는 瑕疵補修保證金 不必要

本協會 會員인 建築士가 逕信部와 設計用役 契約 締

結時 瑕疵補修保證金を 納付한 事例가 있어 本協會로서는 이를 지난 4月 21日 開催된 理事會에 附議하여 眞摯한 討議끝에 建築士法 第19條에 明示되어 있는 建築士의 業務는 技術用役 業務로서 그 性質上 豫算會計法 施行令 第78條(瑕疵補修保證金에 對한 條項) 第1項 但書를 適用함이 妥當할 것으로 보고 財務部長官에게 有權의 解釋을 質疑하였던 바 지난 4월 28일 재국회 1210-2472로서 豫算會計法 施行令 第78條 第1項의 規定은 建築士法 第19條에 規定되어 있는 業務에 對하여는 適用되지 아니하며 또한 建士法 第19條에 規定되고 있는 業務는 그 工事가 아니고 技術用役 業務라고 思料되기 때문에 豫算會計法 施行令 第78條의 規定에 依한 瑕疵補修保證金은 이를 納付할 必要가 없다는 回示를 받아 既히 納付한 瑕疵補修保證金의 選拂을 免었음.